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            |      |
|------------|------|
| 의 안<br>번 호 | 1034 |
|------------|------|

2019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9월 24일,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9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한 영유아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나. 주요골자

-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호)
-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주차 금지 조항 신설 (안 제5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25 ~ 2019. 11. 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원안가결
  - 현 조례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의 경우 안전을 위해 차량탑승시 카시트 설치 및 승·하차

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의 경우에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은 필요하며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이용자가 적은 시설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임산부 탑승 차량의 정의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허용 대상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탑승 차량”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의회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sup>1)</sup>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과 함께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sup>2)</sup>를 제정한 바 있음

서울시는 동 조례 개정 이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규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sup>3)</sup>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확대에 노력한 결과, 대상 주차장 129개 중 101개소에 328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sup>4)</sup>

1) 모자보건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3일, 김선갑 의원 외 11명 발의

- 심사결과 / 공포일자 : 2017년 12월 20일(본회의 가결) / **2018년 1월 4일**

- **주요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위반차량 조치 등**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계획(주차계획과-7036, '19. 6. 3.)

- 설치기준 :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 市 공공시설 주차장** - 설치비용 : **총 주차대수(기계식 제외)의 1% 이상**

-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너비 3.3m× 높이 5.0m 등)와 동일 - 색상 : 보라색

4)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세부 운영·관리 계획(주차계획과-9676, '19. 7. 30.)

- 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신부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자동차 표지 또한 전체 출산인구의 8%에 지나지 않아<sup>5)</sup>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의 홍보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동 개정조례안은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이용자를 임신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sup>6)</sup>에 따른 영유아 동반차량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동반차량의 경우 유모차 등과 같은 안전장치의 승·하차를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반차량에 비해 넓은 주차구획의 필요하고, 임신부로 한정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목적이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sup>7)</sup>, 영유아 동반차량도 임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19 .7월 기준, 단위 : 개소, 면)

| 구분       | 계    |        | 공영  |        | 공공시설 부설 |        |     |
|----------|------|--------|-----|--------|---------|--------|-----|
|          | 개소   | 주차면    | 개소  | 주차면    | 개소      | 주차면    |     |
| 전체 시설    | 236  | 46,953 | 137 | 17,638 | 99      | 29,315 |     |
| 임산부 주차구역 | 설치대상 | 129    | 499 | 49     | 167     | 80     | 332 |
|          | 설치현황 | 101    | 328 | 49     | 167     | 52     | 161 |

**5) 자치구별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2018년 기준)**

| 자치구명 | 계      | 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 구로구   | 서초구   | 금천구   | 광진구   |
|------|--------|-------|-------|-------|-------|-------|-------|-------|-------|
| 발급건수 | 1,461  | 302   | 208   | 37    | 78    | 750   | 86    | -     | -     |
| 출산인구 | 17,892 | 1,919 | 2,310 | 1,418 | 2,911 | 2,714 | 3,011 | 1,351 | 2,258 |

※ 금천구 조례 제정 후 미시행, 광진구 ’19. 시행(50건 발급)

6)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서울특별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조례안이 실질적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신부 탑승 차량의 정의에 영유아 동반차량을 추가하더라도 임신부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지역이 임신부로 한정되어 있어<sup>8)</sup>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지발급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9)</sup>」에서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를 위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기준을 출생 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영유아 기준과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이 공포될 경우 조례에 반영된 영유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참고 : 서울시 등록 임신부 및 영유아 통계(2014~2018년 기준)<sup>10)</sup>

| 등록인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임산부  | 71,993  | 69,887  | 60,151  | 54,948  | 56,464  |
| 영유아  | 332,955 | 265,959 | 260,259 | 229,269 | 174,536 |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신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신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8일, 김해영 의원 외 13 명 발의

-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2017.11.23.) 소위원회부

- 주요내용 : 임신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 위반차량 조치 등

10)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등록임산부는 해당년도 신규 등록된 임신부수 - 등록영유아는 만0세~6세미만 등록관리 인원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u>임산부</u>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p> <p>3. (생략)</p> <p>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p> <p>① ~ ② (생략)</p> <p>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u>임산부</u>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p> | <p>제2조(정의) _____<br/>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br/>_____<br/>--- <u>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u>-----<br/>_____.</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br/>_____<br/>_____<br/>_____<br/>_____<br/>_____<br/>--- <u>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u>-----<br/>_____.</p> |